

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

제정 2015. 5. 18 조례 제145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
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용인시 사회복지협
의회를 지원하고,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
통해 상호 보완·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
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 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
2.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예산지원)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
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
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